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대안)

의안 번호	257
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 : 2014년 12월 17일
제안자 : 운영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- 2014년 8월 27일 김진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의안번호: 35), 2014년 9월 3일 성백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의안번호: 47), 2014년 12월 16일 운영위원장이 제안한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의안번호: 255)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제257회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(2014.12.17)에 상정하여 각각 심사한 결과,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, 그 내용을 통합·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

- 의장 부의장 선거 결선 투표시 당선자 결정방식 변경, 임시회의록의 홈페이지 게재시한 단축 등 그동안 의회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, 2014.12.11일자로 「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가 공포·시행됨에 따라 각 상임위별 소관부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3. 대안의 주요내용

- 의장 부의장 선거시 결선투표에서 득표수가 같을 경우 최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하며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함(안 제14조제3항).
- 「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가 공포·시행(2014.12.11)됨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, 기획경제위원회, 문화체육관광위원회, 보건복지위원회, 도시안전건설위원회,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등의 소관부서 명칭을 일부 변경하고, 신설된 부서의 소관 상임위를 새롭게 지정함(안 제33조제1항).
- 각 상임위원회 위원 중 최소 1명 이상은 운영위원회 위원이 되도록 함(안 제34조 제2항 신설).
- 임시회 회의록은 각 회기가 끝난 날부터 20일(정례회는 30일) 이내에 의회 전자회의록 시스템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함(안 제58조제5항 신설).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,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.

제33조제1항제2호 다목 중 “교육협력국”을 “평생교육정책관”으로, 사목 중 “정보기획단”을 “정보기획관”으로 한다.

제33조제1항제3호 나목 중 “경제진흥실”을 “경제진흥본부”로 한다.

제33조제1항제5호 가목 중 “문화관광디자인본부”를 “문화체육관광본부”로 하고,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차. 서울역사편찬원에 관한 사항

제33조제1항제6호 가목 중 “복지건강실”을 “복지건강본부”로 한다.

제33조제1항제7호 가목 중 “도시안전실”을 “도시안전본부”로 한다.

제33조제1항제8호 가목과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가목은 나목

으로, 나목 중 “주택정책실”을 “주택건축국”으로 하여 다목으로 하며, 다목과 라목은 각각 마목과 바목으로 한다.

가. 도시재생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

라. 도시공간개선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

제3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항은 제3항으로, 제3항은 제4항으로 한다.

② 각 상임위원회 위원 중 최소 1명 이상은 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.

제58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임시회 회의록은 각 회기가 끝난 날부터 20일(정례회는 30일) 이내에 의회 전자회의록 시스템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4조(의장·부의장의 선거) (생 략) ① ~ ② (생 략) 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 <u>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.</u></p>	<p>제14조(의장·부의장의 선거) (현행과 같음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 <u>에는 최다선의원을,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.</u></p>
<p>제33조(상임위원회별 소관) ① (생 략)</p> <p>1. 운영위원회 가. ~ 마. (생 략)</p> <p>2. 행정자치위원회 가. ~ 나. (생 략) 다. <u>교육협력국</u>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. ~ 바. (생 략) 사. <u>정보기획단</u>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. ~ 차. (생 략)</p> <p>3. 기획경제위원회 가. (생 략) 나. <u>경제진흥실</u>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. ~ 사. (생 략)</p> <p>4. 환경수자원위원회 가. ~ 라. (생 략)</p> <p>5.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가. <u>문화관광디자인본부</u>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. ~ 자. (생 략) <u><신 설></u></p> <p>6. 보건복지위원회 가. <u>복지건강실</u>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. ~ 마. (생 략)</p>	<p>제33조(상임위원회별 소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운영위원회 가. ~ 마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행정자치위원회 가. ~ 나. (현행과 같음) 다. <u>평생교육정책관</u>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. ~ 바. (현행과 같음) 사. <u>정보기획관</u>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. ~ 차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기획경제위원회 가. (현행과 같음) 나. <u>경제진흥본부</u>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. ~ 사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환경수자원위원회 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가. <u>문화체육관광본부</u>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. ~ 자. (현행과 같음) <u>차. 서울역사편찬원에 관한 사항</u></p> <p>6. 보건복지위원회 가. <u>복지건강본부</u>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. ~ 마.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<p>7.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가. <u>도시안전실</u>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. ~ 라. (생 략)</p> <p>8. 도시계획관리위원회 <u><신 설></u> 가. 도시계획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. <u>주택정책실</u> 소관에 속하는 사항 <u><신 설></u> 다. 마곡사업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. 에스에이치(SH)공사에 관한 사항</p> <p>9. 교통위원회 가. ~ 마. (생 략)</p> <p>10. 교육위원회 가. (생 략)</p>	<p>7.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가. <u>도시안전본부</u>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. ~ 라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가. <u>도시재생본부</u>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. 도시계획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. <u>주택건축국</u>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. <u>도시공간개선단</u>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. 마곡사업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. 에스에이치(SH)공사에 관한 사항</p> <p>9. 교통위원회 가. ~ 마. (현행과 같음)</p> <p>10. 교육위원회 가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4조(상임위원회의 위원) ① (생 략) <u><신 설></u></p> <p>② (생 략) ③ (생 략)</p>	<p>제34조(상임위원회의 위원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각 상임위원회 위원 중 최소 1명 이상은 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.</u> ③ (현행과 같음) 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8조(회의록) ① ~ ④ (생 략) <u><신 설></u></p> <p>⑤ (생 략)</p>	<p>제58조(회의록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<u>임시회 회의록은 각 회기가 끝난 날부터 20일 (정례회는 30일) 이내에 의회 전자회의록 시스템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.</u> ⑥ (현행과 같음)</p>